

1. 개정이유

시장개척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개선(안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 1) 위원 중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하고 국토부 공무원 및 전담기관 직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투명성 제고
- 2) 전담기관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 자격 기준에 맞는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여 전문성 제고

3) 위원의 이해충돌사유를 규정하고, 위원이 이해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해촉 등)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성 제고

4) 위원회는 대리참석 불가 및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위원회 개최 전에 통보하여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5) 위원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확인을 받아 보관토록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이 가능하게 하여 투명성 제고

나.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기간 명확화(안 제7조)

- 1)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최대 지원기간을 신청일로부터 10개월로 규정

다. 훈령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5조 신설)

- 1)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외건설 촉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외건설협회와 합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평가위원회)”를 “(평가위원회 구성)”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2. 건설업체 또는 건설용역업체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외건설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전담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은 제4조의2 제8항에 따라 해촉된 적이 없는 자로 구성할 것
2. 평가위원의 50% 이상을 학계, 업계 등에 종사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
3.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은 직무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할 것
- ④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할 때에는 평가위원회 위원 중 5명 내외로 구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사업 담당 공무원
2. 전담기관 소속 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사업 담당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평가위원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장으

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심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⑥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리인이 기존 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리참석을 허용한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⑦ 평가위원회 안건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개최 7일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받고 해당 위원을 제외한다. 평가위원이 이해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고의성 및 경중에 따라 해당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

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과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⑨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석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전 등 회의개요
2.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등

제5조제2항제4호 중 “구축하는”을 “구축·운영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100% 이하”를 “100%”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0개월 이내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하며”를 “하며, 국토교통부”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

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관계 기관의 검토의견을 평가자료에 포함시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심의대상 기업이 제4조의2 제9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열람을 요구할 경우 심의대상 기업의 의결 결과에 한하여 열람토록 하되, 평가위원 정보는 열람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약체결”을 “프로젝트 지원사업 협약 체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5년간”을 “원본은 5년간, 사본은 10년간 전자매체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준용하여, 시장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록물을 5년간 보존한다. 단,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예산·회계 관련 문서의 보존방법은 생산년도 다음 해 1월1일부터 5년간 원본을 보존하고, 5년을 초과한 경우 전자매체에 사본으로 보존하도록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예산		
	목	세목	세세목
공통	국외 활동비	여비	항공료
			체재비
			기타경비
			현지대중교통비
			현지차량 임차료
		조사활동비	자료수집비
			번역비
			통역비
			자문료
			통신비
			회의장 임차료
	초청비	여비	항공료
			체재비
			기타경비
			대중교통비
			차량 임차료
		통역비	통역비
		회의장임차료	회의장 임차료
	특허·기술 인증비	해외특허출원료	해외특허 출원료
		해외기술인증료	해외기술 인증료
	홍보비	홍보비	홍보책자 제작비
	컨설팅비용	컨설팅비용	컨설팅비용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제외)	조사·분석비	조사·분석비	현지조사비
			보고서 인쇄비
			외주용역비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사업	입찰 제안서 작성비	입찰제안서 및 관련자료 작성비	현지조사비
			외주용역비
			보고서 인쇄비
			직접투입인력 인건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 번	진 단 내 용	체 크 사 항	
1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업체의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자문 및 심의 의결 결과에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청 럽 서 약 서

○ 안 건 명 :

본인은 위 평가위원회를 위한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이해
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지 아니하며, 양심과 도리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
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
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해외건설시장 시장개척사업 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평가위원 회피신청서

☐ 안전명 :

본인은 상기 안전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심의 및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4조의2 제8항에 의거 심의 기피(회피)를 신청합니다.

기피(회피)사유 :

20 년 월 일

신청인 : 소 속

직 책

성명

(서명)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평가위원회) ① (생 략) ② <u>전담기관의 장은 매년마다 공무원, 학계, 정부산하기관,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 업계 등에서 해외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70명 내외의 평가위원단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신 설>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전담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1. <u>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u> 2. <u>건설업체 또는 건설용역업체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u> 3. <u>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외건설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u> 4. <u>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③ <u>전담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u>

<신 설>

제4조(평가위원회) ③ 전담기관
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의
결이 필요할 때에는 평가위원 5
명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
부 사업 담당 과장 및 전담기관
사업 담당 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신 설>

1. 평가위원은 제4조의2 제8항
에 따라 해촉된 적이 없는 자
로 구성할 것

2. 평가위원의 50% 이상을 학
계, 업계 등에 종사하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할 것

3.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고려하여 평가
위원은 직무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할 것

④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 평가위원회 위원
중 5명 내외로 구성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
가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
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사업 담당 공무
원

2. 전담기관 소속 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
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사업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생략)

⑥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담당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평가위원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
-----,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

-----.

④ (현행 제4조 제5항과 같음)

⑤ 평가위원회의 심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⑥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리인이 기존 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언은 경우에는 대리참석을 허용한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신 설>

⑦ 평가위원회 안건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개최 7일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⑧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사유가 있는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받고 해당 위원을 제외한다. 평가위원이 이해충돌사유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고의성 및
경중에 따라 해당 위원에게 주
의를 주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3.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
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
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
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
문, 연구, 용역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 설>

제5조(지원내용) ① (생 략)

②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사업자 및 공기업, 관련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인프라 협력거점을 구축하는 공동거점 지원사업

5. (생 략)

제7조(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① (생 략)

②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이하 “지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나목부터 라목

⑨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석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 회의개요

2.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 구축·운영하는

5.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

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10%P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 : 100% 이하

③ (생략)

<신설>

제10조(접수 및 평가) ①·② (생략)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신청내용,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검토하여 사업내용, 예산규모 등(다만,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사업의 경우 예산 지원한도를 말한다.)을 조정하여야 하며, 대사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1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

1. (현행과 같음)

2. ----- 100%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0개월 이내로 한다.

제10조(접수 및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하며, 국토교통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평가자료에 포함시킬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기업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
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
의 장은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15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사
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지원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
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를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
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이

--- 하며, 심의대상 기업이 제4
조의2 제9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열람을 요구할 경우
심의대상 기업의 의결 결과에
한하여 열람토록 하되, 평가위
원 정보는 열람대상에서 제외하
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협약의 변경) ① -----
----- 프로젝트 지원사업 협약
체결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원본은 5년간, 사본은 10년간
전자매체에 -----

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생략)

② (생략)

제22조(자료 보존) ① 전담기관의
장은 문서의 효율적인 보존 관
리를 위해 보존기간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문서의 보존기
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라 정한다.

<신설>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자료 보존)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준용하
여, 시장개척 기업활동 지원사
업과 관련된 기록물을 5년간 보
존한다. 단, 예산·회계 관련 기
록물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
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산·회계 관
련 문서의 보존방법은 생산년도
다음해 1월1일부터 5년간 원본
을 보존하고, 5년을 초과한 경
우 전자매체에 사본으로 보존하
도록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
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